

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0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5월 27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대학 대내·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고, 대학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시립대 조직 일부를 개편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회복지관 폐지 및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 신설(안 제7조제1항제5호)

- 기존 사회복지관 업무를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에서 수행

나. 국제교육원 폐지(안 제7조제1항제9호 삭제) 후 국제처 신설

- 부속기관인 국제교육원을 대학본부 산하 하부조직인 국제처로 확대개편

※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사항 : 국제처

다. 교육혁신원 신설(안 제7조제1항제9호)

- 기존 자유융합대학, 미래혁신원에서 수행하던 교양교육, 글로벌외국어교육, 교수학습개발 관련 업무 전담부서 신설

라. 미래혁신원(안 제7조의2) 폐지 후 관련 업무 기획처로 이관

- 대학의 기획·평가·대학혁신·성과관리 기능 일원화로 대학발전을 위한 기획조정 역할 강화

※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사항 : 기획처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고등교육법」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
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평가제외

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 (2024. 4. 12. ~ 5. 2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지우 (☎2133-6739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1항 중 “「고등교육법」 제6조”를 “법 제6조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

9. 교육혁신원

제7조의2 중 “인권센터 및 미래혁신원을”을 “인권센터를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비용추계서"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·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·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발의·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**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(이하 "비용"이라 한다)에 관하여 추계** (이하 "비용추계"라 한다)한 자료를 말한다.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시립대 조직개편 사항으로,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이 없어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 추계서 미첨부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행정6급 서지우(☎ 2133-6739)